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1호 2009년 3월 pp.175~204
한국세무학회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금주* · 홍정화**

<요 약>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과 의뢰인의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 요인이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여 합리적인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세무대리서비스 보수는 기장보수, 세무조정료, 불복청구 보수 등 3종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지역 등 수도권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대리인과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연구대상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서비스 업무를 의뢰하는 의뢰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중 부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세무대리인 239부와 의뢰인 626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의 연구자료로 이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기장보수 결정요인이 기장보수에 미치는 영향과 의뢰인의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이 세무조정료 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세무대리인의 불복청구 보수 결정요인이 불복청구 보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뢰인의 기장보수 결정요인이 세무기장 보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출액, 기업형태, 종업원 수, 세무서비스 만족도, 세무대리인의 경력, 사업자 유형, 세무상담 빈도수가 기장보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뢰인의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이 세무조정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출액, 원가계산업종, 세무대리인의 경력이 높으면 세무조정료가 높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서비스 만족도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셋째, 세무대리인의 불복청구보수 결정요인이 불복청구보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복청구액, 불복청구 감세액이 많으면 불복청구 보수가 높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경력과 세무서비스 만족도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주제어> 세무대리서비스, 기장보수, 세무조정료, 불복청구보수

* 세무사 이금주사무소 대표(경영학박사), lgj3300@hanmail.net, 031-878-6600, 제1저자

** 경원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jhhong@kyungwon.ac.kr, 031-750-5215, 교신저자

I. 서 론

세무대리서비스 보수는 세무대리인과 의뢰인의 계약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이 세무 관련 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약정한 대가를 받는 거래관계에 따른 가격이다. 세무대리서비스 보수는 기장 대행에 따른 기장보수, 세무조정료, 불복청구 보수, 세무자문료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기장보수는 의뢰인 사업체의 기장업무를 대행하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매월 약정된 일정액의 보수를 계속적으로 수취하는 것이며, 조정수수료는 법인의 법인세 결산시와 개인의 종합소득세 결산시 세무조정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불복청구 보수는 세금에 관한 불복청구 업무에 대한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세무대리서비스 보수를 말하며, 세무자문료 등은 세무고문료, 조사수수료, 경영자문료, 세무컨설팅 수수료 등 각각의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¹⁾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서비스 보수는 1998년까지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보수표’에 의해 규제되어 왔으나, 1999년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 보수규정이 폐지되고 자율화 되었다. 현재 세무대리서비스 보수는 세무대리인과 세무서비스 의뢰인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세무대리서비스의 보수는 세무대리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노력이나 시간은 물론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대리인의 노력, 세무대리인의 명성이나 협상력, 의뢰인의 세무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무대리서비스의 적정한 보수는 의뢰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세무대리서비스 보수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기장보수는 기장수행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 세 부담 최소화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 및 이용자의 세무서비스 만족도 충족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또한 세무조정료, 불복청구 보수, 세무자문료 등의 보수는 세무대리서비스의 투입량과 세무대리인의 의뢰인 세 부담 최소화 노력, 세무대리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노력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서비스 보수에 대응되는 세무대리서비스 수행 투입자원이나 투입량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세무대리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의뢰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세무대리서비스 의뢰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질 좋은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 받고 세무조사위험을 회피하거나 감세나 절세 등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반면에 세무대리인은 세무서비스 의뢰인에 대한 기장 및 세무조정, 세무조사수입 및 의견진술, 불복청구의 대행, 세무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 등 투입노력 관련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의 자율화는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받고 적절한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이 세무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과 의뢰인이 어떤 요인을 고려하여 세무대리서비스 보수수준을 결정하는

1)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규정과 종전 세무사 보수규정에 의거 요약 정리함.

지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의 개방 및 확대로 인하여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회계감사보수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진 바 있으나(최 관 · 주인기 1998 ; 권수영 · 김문철 2001 ; 나종길 · 최기호 2006 ; 노준화 · 배길수 ; 2008), 세무대리서비스 보수에 대한 연구는 신종만(2005)과 이금주 등(2008) 이외에는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과 의뢰인이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 세무대리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합리적인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세무대리서비스 보수는 기장보수, 세무조정료, 불복청구 보수 등 3 종류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세무대리서비스 제도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세무대리제도의 시작은 1958년 경제부흥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함께 조세제도 측면에서 인정과세의 지양과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당시 재무부 사세국에서 검토한 세무대리제도의 법제화 방안에서부터이다. 3년 후인 1961년 그간 검토되어 온 세무대리사 법안에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로 하여 제정한 ‘세무사법’(법률 제712호)으로 제도화 되었다. 당시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조세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절한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의뢰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이의신청, 기타사항(소송제외)의 대리 및 상담을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게 되었다.

1969년 8월의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년 9월의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녹색신고자에 대한 조정계산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는 직능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세무대리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세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72년에 세무사법이 개정되었으며, 1975년 전면적인 세제개혁에 따라 영업세법과 소득세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개인 영업세와 소득세 신고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에 서면조사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면서 세무대리업무 영역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78년 12월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시험의 일부면제의 근거를 재조정하고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었다. 1980년부터 법인세법이 신고납세주의와 외부조정제도를 채택하여 세무사 업무도 신장되는 계기가 되었고, 조세행정이 고도화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 이후 1995년 세정개혁추진에 의한 자율세정의 확대,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세제의 실

시, 그리고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재시행(김연식, 2003)과 더불어 2003년부터 급속한 전산체계 발전으로 인한 전 세목의 전자신고 활성화, 최근의 종합부동산세 이르기까지 자율신고납부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 등으로 인하여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으며, 그 추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²⁾

2.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의 현황

세무서비스 보수는 기본적으로 세무서비스의 가격이므로 세무대리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세무서비스의 공급자는 세무대리인이며, 수요자는 세무서비스 의뢰인이다. 불복청구와 세무자문 등의 경우는 의뢰인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계약관계가 성립하지만 기장대리서비스와 세무조정료의 경우 수요자는 기장을 의뢰거나 세무조정을 의뢰하는 사업자이므로 지속적인 계약관계가 유지된다.

세무서비스 시장의 공급자인 세무대리인과 수요자인 세무서비스 의뢰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무대리인 현황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서비스시장은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세무사는 초창기에는 131명으로 출발하여 2008년 3월말 현재 7,653명으로 증가하였다.

세무사법 제정 당시에는 세무대리인의 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학력이나 경력의 소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부과없이 자격을 주어왔지만 점차 그 대상을 축소하여 현재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등 법에 정한 자에 한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으로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있지만 주로 세무대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연도별 현황은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전국 개업세무사 현황

(단위 : 명)

연도 \ 지역	합계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008	7,653	3,426	1,843	1,042	519	410	413
2007	7,280	3,283	1,728	985	494	399	391

- 2) 세무대리인에 대한 규제 : 세무대리 업무는 고도의 공익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세무사의 등록 및 징계 그리고 세무사법에 대한 업무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감독을 받으며, 세무대리업무 종합관리 및 보수규정관리는 국세청의 감독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세무사회를 통하여 회원에 대한 교육과 징계 기타 제반업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김연식, 2003.)

〈표 1〉 전국 개업세무사 현황 (계속)

년도 \ 지역	합계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006	6,882	3,135	1,604	948	463	375	357
2005	6,485	2,966	1,477	902	443	363	334
2004	6,012	2,811	1,332	825	403	339	302
2003	5,436	2,579	1,169	759	363	298	268
2002	4,917	2,367	1,015	691	338	276	230
2001	4,618	2,236	928	655	315	262	222
2000	4,422	2,067	821	616	284	241	193
1999	3,785	1,875	706	556	262	217	169
1998	3,691	1,896	648	532	248	211	156

자료원 : 한국세무사회, 세무법인 : 155개(997명) (매년 3월말 현재)

〈표 2〉 전국 개업 공인회계사 현황

(단위 : 명)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원	3,366	3,602	4,980	5,354	5,890	6,444	7,148	8,485	9,285	10,187	11,288

자료원 : 한국공인회계사회(매년 3월말 현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7년간 세무사의 수는 2,000년 4,422명에서 2008년 7,653명으로 173%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세무대리인 업무를 하는 공인회계사의 경우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4,980명에서 2008년 11,288명으로 226%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개업 변호사 8,744여 명 중 세무대리서비스 목적으로 2008년 3월말 현재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변호사는 69명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세무대리서비스 의뢰인이 폭 넓은 세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세무대리인의 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무대리인의 양적 증가로 인하여 세무서비스 수입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세무대리서비스 보수의 저가 경쟁으로 인하여 세무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 기장사업자의 현황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인원 현황은 <표 3>과 같으며, 외형규모별 법인 현황은 <표 4>과 같다.

<표 3>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인원이 2006

년의 경우 1,394,979명으로서 2002년 918,803명에 비하여 51% 이상 증가하였다. 총 신고인원 중 장부에 의한 신고율은 2006년 50.9%로서 2002년보다 5.2%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6년 기장에 의한 소득세 신고률은 50.9%로 2005년 53.9%에 비하면 3%가량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비중이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기준경비율 신고자 254,811명을 차감한 단순 추계신고자는 966,271으로 2005년 965,662명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3〉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인원 현황

(단위 : 명)

신고유형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계	918,803 (45.7%)	1,018,068 (48.1%)	1,143,900 (51.2%)	1,230,024 (53.9%)	1,394,979 (50.9%)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신고	462,719	514,187	542,249		628,355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신고	81,652	84,328	77,714		85,082
	간편장부 소득금액 신고	374,432	419,553	523,937		685,542
추계신고	계	1,023,137	1,012,943	989,294	965,662	1,221,082
비사업자	계	68,423	83,516	102,711	83,811	120,417
계	총 계	2,010,363	2,114,527	2,236,905	2,279,497	2,736,478

자료원 : 국세청 통계연보, (2005년도는 장부 구분표시 안됨), 2006년 추계신고자³⁾

<표 4>를 살펴보면 2002년도 말에는 271,353개 법인에서 2006년도 말 352,647개 법인으로 증가하여 법인사업자 증가율이 30%에 이른다. 법인사업자는 무기장이에 따른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두 기장사업자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표 4〉 외형규모별 법인 현황

(단위 : 업체수)

외형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10억미만(영세법인)	169,142	185,827	189,514	199,080	214,176
10억 - 100억원(소 법인)	88,747	102,035	109,866	114,871	118,548
100억원 - 500억원(중 법인)	10,879	12,679	14,120	15,751	16,192
500억원 이상(대 법인)	2,585	2,921	3,277	3,611	3,731
계	271,353	303,462	316,777	333,313	352,647

자료원 : 국세청 통계연보

3) 2006년 추계신고자 중 기준경비율 신고자는 254,811명이고 단순경비율신고자는 966,271명이다.

그러므로 2006년도 말 현재 개인과 법인으로서 가장사업자 전체는 1,747,626개 업체인 것으로 보여지며, 세무서비스에 종사하는 전체 세무대리인이 약 18,941명 정도인 것으로 볼 때 세무대리인 1인당 가장사업자 수가 약 92건일 것으로 추정된다.

3. 세무대리서비스 수입 방법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서비스 수입제도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자유수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서비스 의뢰인 간의 계약에 의해 세무대리서비스 수입관계가 형성된다. 세무대리서비스 보수는 일반적으로 계약시점에 보수가 책정된다고 볼 수 있다. 기장보수는 최초 보수가 결정 후, 매년 전 사업년도 사업실적을 반영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계약을 하며, 세무조정료는 법인의 경우는 사업년도 종료 후 법인결산 및 신고 시에 결정되며, 개인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결정된다. 불복청구 보수나 세무자문료의 경우는 계약 시에 결정되며, 세무대리서비스 진행 중 계약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추후에 변경계약을 하게 된다. 세무대리서비스보수 계약 시에 세무서비스의 품질과 세무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정보가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상호간에 합의에 의해 보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선행연구의 검토

가. 선행연구의 요약

김홍규(2004)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이용자측면에서 품질요인, 품질요인에 대한 기대 및 성과와 수준, 그리고 품질성과와 세무대리인 변경의사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항목은 A유형과 B유형으로 나누어 납세의무자 특성 등에 관한 항목을 A유형으로, 그리고 B유형에는 세무대리서비스 품질항목에 대한 기대수준과 성과수준을 동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세무대리인 결정시 기장료 등 수입료가 저렴하여 선정하였다는 응답이 280명 중 20명(7.1%)으로 나타났으며,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였다면 그 주된 이유로서는 ‘수수료 가격’ 때문이라는 응답이 70명 중 5명(7.1%)으로 나타나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재의 세무대리인을 변경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는 응답자 53명 중 20명(32.8%)이 ‘수수료 가격’이라고 응답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장의뢰인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의뢰시 기장보수 등 세무서비스 수수료가 최초 기장수입시와 세무대리인 변경시에는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으나, 현재의 기장보수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여 세무대리인을 변경할 의사는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된다.

신종만(2004)은 세무서비스시장의 경쟁하에서 세무서비스 기장보수에 대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무서비스 기장보수의 결정요인을 크게 투입자원(매출액, 업종, 기업형태, 종업수), 세무조사위험(소비성경비, 중점관리업종) 및 세무대리인 명성(세무대리인 소속형태, 세무대리인 경력)으로 구분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액이 높을수록 기장보수가 더 높게 결정되고, 제조업의 기장보수가 비제조업의 기장보수 보다 더 높게 결정되며, 법인이기업이 개인기업보다 더 높은 기장보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뢰인 기업의 종업원수가 많을수록 기장보수가 더 높게 결정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투입자원이 많을수록 더 높은 대가가 요구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둘째, 중점관리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기장보수가 더 높게 결정되며, 소비성경비 증가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을수록 기장보수는 더 높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무조사위험이 클수록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증대되어 기장보수가 더 높게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주는 것이다.

셋째, 세무대리인의 경력이 많을수록 더 높은 기장보수가 요구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나, 세무법인인 개인세무대리인 보다 더 높은 기장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가설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무대리인의 명성이 분명하게 기장보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세무대리인의 명성과 관련하여 세무대리경력이 많은 세무대리인은 전문가로서의 세무대리인 역할이 증대되어 기장보수가 더 높게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다.

이금주 등(2008)은 세무대리인과 의뢰인간의 세무보수계약 체결시 세무보수결정요인들에 대하여 두 집단간의 중요도 순위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대리인과 의뢰인의 기장보수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매출액이 1순위로 기장보수 결정시 제일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은 매출액 등 투입자원 관련요인을 상위 순위로 인식하였으나 의뢰인은 세 부담 최소화 요인과 세무서비스 만족도 요인과 세무대리인의 명성 요인을 상위순위로 인식하여 두 집단 간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는 세무대리인은 1위 매출액, 2위 원가계산, 3위 세무서비스 만족도, 4위 세무대리인의 명성 순이었으나, 의뢰인은 1위 매출액, 2위 세무서비스 만족도, 3위 세무대리인의 명성, 4위 원가계산여부 등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순위는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불복청구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는 두 집단 모두 1위 불복청구 감세액, 2위 불복청구액, 3위 세무대리인의 명성 및 협상력, 4위에 서비스만족도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이상에서 세무대리서비스 기장보수 결정요인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장보수 관련 변수 선정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선정한 8가지 변수에 11가지를 추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설계하였다. 신종만(2004)은 기장보수 결정요인으로 투입자원, 세무조사위험, 세무대리인 명성요인을 도출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투입자원에는 매출액, 업종, 기업형

태, 종업원 수 등 4가지 세부가설을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종만(2004)의 가설에 사업자 유형, 지역특성, 상담빈도수 등 3가지를 추가하여 7개변수로 검증하였다. 신종만의 세무조사위험은 중점관리업종과 소비성증가율 업종 등 2가지를 변수로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가능성을 낮출 기대, 세무조사 시 원활한 해결, 호황업종, 장기미조사업자, 신고 소득율 저조자 등 5가지 가설을 추가하여 7개의 변수를 세부담 최화 요인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명성에 대하여는 신종만(2004)은 세무대리인의 소속형태, 세무대리인의 경력 등 2가지를 변수로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협상력, 세무대리인과 친소관계 등 2가지를 추가하여 4가지 변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세무대리 서비스 만족도를 변수에 추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않은 세무조정료, 불복청구 보수 관련 변수가 세무조정료 및 불복청구 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검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장보수 이외에 선행연구인 신종만(2004)이 검증하지 아니한 세무조정료 가설을 설정하여 매출액, 원가계산 여부, 세무대리인의 명성 및 협상력, 세무서비스 만족도 등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며, 불복청구 가설을 설정하여 매출액, 불복청구 감세액, 세무대리인 명성, 세무서비스 만족도 등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설계

1. 가설의 설정

세무대리서비스 의뢰인의 관점에서 기장보수 결정요인이 기장보수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이 세무조정료에 미치는 영향, 세무대리인의 관점에서 불복청구 보수 결정요인이 불복청구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 기장보수 결정요인이 기장보수에 미치는 영향 가설

의뢰인의 기장보수 결정요인이 기장보수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기장보수 결정요인으로서는 매출액, 업종, 기업형태, 종업원 수, 사업자 유형, 지역특성, 상담빈도 수, 중점관리업종, 소비성관리업종, 장기미조사업체, 신고 소득율 저조업체, 세무대리인의 소속형태, 세무대리인의 경력, 세무서비스 만족도 등 14가지로 분류한다.

[가설 1] 세무대리서비스 의뢰인의 관점에서 기장보수 결정요인(14가지)은 기장 보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매출액이 높을수록 기장보수가 높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1-2 업종이 제조업이면 비제조업보다 기장보수가 높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1-3 기업형태가 법인기업이면 개인기업보다 기장보수가 더 높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1-4 사업자유형이 과세사업자이면 면세사업자보다 기장보수가 더 높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1-5 종업수가 많을수록 기장보수가 더 높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1-6 의뢰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외지지역이면 상가밀집지역보다 기장 보수가 더 높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1-7 세무상담 빈도수가 많으면 기장보수가 더 높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1-8 소비성 증가율이 높을수록 기장보수가 더 높게 책정될 것이다.

가설 1-9 중점관리업종이 다른 업종보다 기장보수가 더 높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1-10 신고소득을 저조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기장보수가 더 높게 책정될 것이다.

가설 1-11 장기 미조사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기장보수가 더 높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1-12 세무법인의 기장보수가 개인세무대리인보다 더 높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1-13 세무대리인의 경력이 많을수록 기장보수가 더 높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1-14 세무서비스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장보수가 더 높게 결정될 것이다.

나.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이 세무조정료에 미치는 영향 가설

의뢰인의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이 세무조정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은 매출액, 원가계산여부, 세무대리인의 명성 및 협상력, 세무서비스 만족도 등으로 4가지로 분류한다.

[가설 2] 세무대리서비스 의뢰인의 관점에서 세무조정료 결정요인(4가지)은 세무조정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매출액이 높을수록 세무조정료가 높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2-2 원가대상 업종이면 세무조정료가 높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2-3 세무대리인의 명성과 협상력이 높을수록 세무조정료가 높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2-4 세무서비스만족도가 높을수록 세무조정료가 높게 결정될 것이다.

다. 불복청구 보수 결정요인이 불복청구보수에 미치는 영향 가설

세무대리인의 관점에서 불복청구 보수 결정요인이 불복청구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불복청구 보수 결정요인으로는 불복청구액, 불복청구 감세액, 세무대리인의 명성, 세무서비스 만족도 등으로 4가지로 분류한다.

[가설 3] 세무서비스 대리인의 관점에서 불복청구보수 결정요인(4가지)은 불복청구 보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불복청구액이 높을수록 불복청구보수가 높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3-2 불복청구 감세액이 높을수록 불복청구보수가 높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3-3 세무대리인의 명성과 협상력이 높을수록 불복청구보수가 높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3-4 세무서비스만족도가 높을수록 불복청구보수가 높게 결정될 것이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가. 종속변수

(1) 기장보수

기장보수는 세무기장서비스에 대하여 의뢰인이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보수 금액을 말한다. 기장보수는 투입자원관련요인(매출액, 업종, 기업형태, 종업원 수,사업자 유형, 지역특성, 상담빈도수)과 세부담 최소화 요인(중점관리업종, 소비성 경비 증가율, 호황업종, 장기미조사업자, 신고소득을 저조자) 및 세무대리인명성(세무대리인 소속형태, 세무대리인 경력, 협상능력, 세무대리인과 친소 관계)과 세무서비스 만족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기장보수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월 기장보수액으로 측정한다.

(2) 세무조정료

세무조정료는 세무대리인이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결산과 세무조정을 하고 받는 보수를 말한다. 세무조정료는 매출액이나 원가계산 업종, 세무대리인의 명성, 세무서비스의 만족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세무조정료 보수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3) 불복청구 보수

불복청구 보수는 불복청구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보수를 말한다. 불복청구 보수는 불복청구액, 불복청구 감세액, 세무대리인의 명성, 세무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불복청구 보수는 불복청구 대행 계약 수임 시 지급한 보수로 측정한다.

나. 설명변수

(1) 매출액

매출액변수는 직전 연도 매출액으로 측정한다.

(2) 업 종

업종변수는 제조업이면 1, 비제조업이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s)로 측정한다.

(3) 기업형태

기업형태 변수는 법인기업이면 1, 개인기업이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로 측정한다.

(4) 종업원 수

종업원 수 변수는 현재 상시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수로 측정한다.

(5) 사업자 유형

사업자유형변수가 과세사업자이면 1, 면세사업자이면 0의 값을 더미변수로 측정한다.

(6) 지역특성

지역특성변수가 외지지역이면 1, 상가밀집지역이면 0의 값을 더미변수로 측정한다.

(7) 상담빈도수

상담빈도수 특성은 상담빈도수가 많으면(3회 이상) 1, 작으면 0의 값을 더미변수로 측정한다.

(8) 중점관리 업종

중점관리업종 변수는 과세 관청에서 정하여 개별기업에 통보하는 것으로, 중점관리 업종이면 1, 중점관리 업종이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로 측정한다.

(9) 소비성경비 증가율

소비성 경비란 접대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등을 말한다. 이들 소비성경비 항목에 대하여 직전 년도 금액과 직전 년도 금액을 이용하여 그 증가율을 측정한다.

(10) 장기미조사업체

장기미조사업체 변수는 세무조사를 받은 지 경과한 연수로 측정한다.

(11) 신고소득을 저조업체

신고소득을 저조업체 변수는 세무서 성신신고 안내문을 받았으면 1, 받지 않았으면 0의 값을 더미변수로 측정한다.

(12) 세무대리인 소속형태

세무대리인 소속형태 변수는 가장 의뢰하는 세무대리인의 형태가 세무법인이면 1, 개인세무대리인이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로 측정한다.

(13) 세무대리인 경력

세무대리인 경력변수는 실제 가장 의뢰하는 세무대리인의 개업 연수로 측정한다.

(14) 세무서비스 만족도

세무서비스 만족도는 의뢰인의 만족도를 의미한다.

3. 자료의 수집과 분석

가. 연구 대상자의 선정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이나 세무조정 불복청구 세무자문 등 세무서비스를 의뢰하는 의뢰인으로 하였다.

나. 자료의 수집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설계 및 배부 회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의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서비스를 의뢰하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2008. 2. 20부터 2008. 3. 20까지 30일 동안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세무사 91명을 선정하여 세무대리인용 설문지 1부와 세무서비스 의뢰인용 설문지 10부를 세무서비스 의뢰인 선정요령 및 설문지 작성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여 송부하거나 근거리에 근무하는 세무대리인에는 직접 전달하였다.

설문지 작성요령 및 동일한 설문지 문항을 이메일로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설문 취지를 설명하거나 근거리에 근무하는 세무대리인은 직접 방문하여 설문 취지나 작성 방법을 구두로 설명하였다. 두 집단 모두 회수된 설문지는 세무사용 80부, 의뢰인용 649부가 수거되었다.

그리고 상기 세무대리인 이외 세무대리인만 24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발송하여 답변하도록 하였으며 인터넷 답변율이 저조하여 인터넷 미응답자에게 다시 팩스로 발송하여 수거하였으며, 법인세 세무간담회의 장소에 참석하여 직접 수거하여 세무대리인용 173명(인터넷 답변 51명, 팩스 76명, 직접수집자 46명)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이렇게 총 회수된 설문지는 세무대리인용 254부, 세무서비스 의뢰인용 649부를 수거하였다.

설문지 중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세무대리인 14부와 의뢰인용 23부를 제외하고 세무대리인용 239부(유효율 : 94.4%)와 세무서비스 의뢰인용 626부(유효율 : 96.4%)를 대상으로 통계처리를 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 분석 대상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설문지 배부 및 회수, 분석대상현황

구 분	배포된 설문지		회수된 설문지		회수율		분석대상	
	대리인	의뢰인	대리인	의뢰인	대리인	의뢰인	대리인	의뢰인
두 집단 동시배부	91	910	80	649	87.9%	71.3%	79	626
세무대리인만 배부	245	—	173	—	70.6%	—	160	—
계	336	910	253	649	75.2%	71.3%	239 (94.4)	626 (96.4)

다.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 분석방법은 표본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표본 및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의뢰인의 기장보수 결정요인이 기장보수에 미치는 영향과 의뢰인의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이 세무조정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무대리인의 불복청구보수 결정요인이 불복청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가. 의뢰인에 대한 기술통계량

(1) 의뢰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뢰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의뢰인의 특성 분포

구 분		빈 도	비율(%)	누적비율(%)
업 종	제조업	279	44.57	44.57
	비제조업	347	55.43	100.00
기업 형태	법인	279	44.57	44.57
	개인	347	55.43	100.00
사업자유형	과세사업자	585	93.45	93.45
	면세사업자	41	6.55	100.00
사업장소재지	외지지역	401	64.06	64.06
	상가밀집지역	225	35.94	100.00
세무상담 빈도수	많음(월 3회 이상)	300	47.92	47.92
	적음	326	52.08	100.00
중점관리업종통보여부	예	45	7.19	7.19
	아니오	581	92.81	100.00
낮은 신고 소득률 통보여부	예	67	10.70	10.70
	아니오	559	89.30	100.00

〈표 6〉 의뢰인의 특성 분포 (계속)

구 분		빈 도	비율(%)	누적비율(%)
기장의뢰 세무대리인 형태	세무법인	90	14.38	14.38
	개인 세무대리인	536	85.62	100.00
기장보수 적정성	많다	40	6.39	6.39
	적정하다	413	65.97	72.36
	저렴하다	157	25.08	97.44
	아주 저렴하다	16	2.56	100.00
사업장소재지	특별시	170	27.16	27.16
	광역시	32	5.11	32.27
	일반시	381	60.86	93.13
	군소재	43	6.87	100.00

(2) 의뢰인의 기술통계량

의뢰인의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7>과 같다.

〈표 7〉 의뢰인의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량

(단위 : 천원, 년, 명)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월 기장보수	626	15	800	185.29	89.87
세무조사를 받은 후 기간정도	626	0	20	3.99	3.38
세무대리인개업경력	626	1	30	10.41	5.16
2006년 매출액	626	0	107,603,291	2,001,051.12	5,264,275.76
2007년 매출액	626	0	331,973,433	2,493,819.04	13,546,258.27
상시종업원수	625	0	87	9.16	10.35
2005년 접대비	625	0	140,331	9,377.27	13,066.48
2006년 접대비	625	0	9,865,490	28,225.42	397,719.90
2005년 기부금	625	0	182,280	986.91	8,176.38
2006년 기부금	624	0	155,461	1,021.51	7,471.31
2005년 광고선전비	626	0	3,714,038	9,693.81	150,756.87
2006년 광고선전비	626	0	6,109,182	13,173.94	244,683.23
2005년 비용 합계	625	0	37,140,318	73,468.72	1,485,448.33
2006년 비용 합계	625	0	18,408,182	60,043.17	834,454.18

의뢰인이 현재 거래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 기장보수는 평균 186천원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은 후 기간은 평균 3.9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 개업 경력은 평균 10.4년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30년에서 최소 1년으로 나타나 세무대리인 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뢰인의 2006년 매출액 평균은 20억원, 2007년 매출액 평균은 24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시 종업원 수의 평균은 9.16명이며 소비성경비 합계의 평균은 2005년도에는 73,468천원이며, 2006년도에는 60,073천원으로 나타났다.

나. 세무대리인에 대한 기술통계량

(1) 세무대리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무대리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세무대리인의 특성

구 분		빈 도	비율(%)	누적비율(%)
성 별	남 자	229	95.82	95.82
	여 자	10	4.18	100.00
연 령	29세 이하	2	0.84	0.84
	20세 - 39세	14	5.86	6.69
	40세 - 49세	60	25.10	31.80
	50세 - 59세	131	54.81	86.61
	60세 이상	32	13.39	100.00
직 군	세무법인	36	15.06	15.06
	개인세무대리인	203	84.94	100.00
경 력	4년 이하	47	19.67	19.67
	5년 - 10년	91	38.08	57.74
	11년 - 15년	60	25.10	82.85
	16년 - 20년	19	7.95	90.79
	21년 이상	22	9.21	100.00
사업장	특별시	74	30.96	30.96
	광역시	17	7.11	38.08
	일반시	145	60.67	98.74
	군소재지	3	1.26	100.00

4) 본 연구 대상자의 기장보수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사업자 (170명)평균액 : 202천원, 인천광역시 사업자(32명) 평균액 : 178천원, 일반시 사업자(381명) 평균액 : 178천원, 군소재지 사업자(43명) 평균액 : 193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의 성별에서는 남자가 95.82%, 여자 4.18%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남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50세 - 59세가 54.81%, 40세 - 49세가 25.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군은 개인세무대리인 84.94%, 세무법인 15.06%로 대부분 개인세무대리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경력은 5년에서 10년이 38.08%, 11년에서 15년이 25.10%로 대부분 차지했다. 사업장은 특별시 30.96%, 일반시 60.67%, 광역시 7.11%로 대부분 서울시 및 일반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세무대리인의 불복청구 실태

세무대리인의 불복청구에 관한 사항은 <표 9>와 같다. 세무대리인 239명 중에서 불복청구 경험은 120명(50.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불복청구 실태(세무대리인)

구 분	빈 도	비율(%)	누적비율(%)
불복청구	없음	121	50.62
	있음	118	49.37
			100.00

세무대리인의 불복청구 관련 기술통계량은 <표 10>과 같다. 세무대리인의 불복청구 경험 중 평균 불복청구액은 5억1천7백만원, 감세액은 3억3천8백만원이며, 불복청구 보수액은 2천9백7십1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세무대리인의 불복청구 관련 기술통계량

(단위 : 천원)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불복청구 보수액	118	0	560,000	29,710.3390	70,499.29657
불복청구액	118	50	10,000,000	517,208.3644	1,491,211.36848
불복청구감세액	118	0	9,000,000	338,899.1102	1,090,409.34281
세무대리인의 명성	118	1	5	3	1.07063
세무서비스만족도	118	1	4	3	0.72256

2. 상관관계분석

가설 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가설검증에 사용될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기장보수 결정요인의 상관관계 분석(의뢰인 관점)

의뢰인의 관점에서 기장보수결정요인 및 기장보수 변수들의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의뢰인의 경우, 상관분석결과 기장보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매출액, 기업체 종업원 수, 세무대리인의 협상능력, 세무조사 이후 경과기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1> 기장보수 결정요인 상관관계 분석(의뢰인)

구 분	월기장 보수	매출액	상시 종업원수	세무상담 빈도	소비성경비 증가율	세무조사이후 경과기간	서비스 만족도
월기장보수	1						
매출액	1**	1					
기업체 종업원수	0.14**	0.06	1				
세무대리인 협상능력	0.51**	0.09*	0.22**	1			
소비성경비증가율	0.24	-0.02	-0.05	0.12**	1		
세무조사이후 경과기간	-0.07**	-0.01	0.09*	-0.03	-0.07	1	
서비스 만족도	0.11	0.07	-0.06	-0.08*	-0.07	0.07	1

** p<0.01, * p<0.05

나. 세무조정료 결정요인 상관관계 분석(의뢰인 관점)

의뢰인 관점에서 세무조정료 결정요인 변수들의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세무조정료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매출액, 원가계산 여부로 나타났다.

<표 12>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의 상관관계(의뢰인)

구 분	의뢰인 매출액	원가계산 여부	세무대리인의 명성 및 협상력	세무서비스 만족도	LN (세무조정료)
의뢰인 매출액	1				
원가계산 여부	0.36**	1			
세무대리인의 명성 및 협상력	-0.01	0.15**	1		
세무서비스만족도	0.02	0.09*	0.52**	1	
LN(세무조정료)	0.12**	0.12**	0.01	0.04	1

** p<0.05, * p<0.1

각 기장보수 및 세무조정료 결정요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일부 변수들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되면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r \geq 0.7$ 일 때 다중공선성이 존재(Montgomery & Peck 1982, 이금주 2008에서 재인용)하므로, 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가 0.7을 초과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분산확대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VIF의 값 1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로 본 연구의 변수들의 VIF가 2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 불복청구 보수 결정요인 상관관계 분석(세무대리인 관점)

세무대리인의 불복청구 보수 결정요인 변수들의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 불복청구보수 결정요인의 상관관계 (세무대리인)

구 분	세무보수액	불복청구액	불복청구 감세액	세무대리인의 명성 및 협상력	세무서비스 만족도
세무보수액	1				
불복청구액	0.6721**	1			
불복청구감세액	0.7906**	0.6345**	1		
세무대리인의 명성	0.1241	0.0716	0.1553	1	
세무서비스만족도	0.0756	0.2122*	-0.0081	-0.0263	1

** $p < 0.05$, * $p < 0.1$

세무대리인의 불복청구 보수 결정요인의 상관분석 결과, 세무보수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불복청구액과 불복청구 감세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복청구보수요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일부 변수들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되면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r \geq 0.7$ 일 때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므로, 다중공선성이 의심된다. 본 모형과 관련하여 상관관계가 0.7을 초과하고 있지만 분산확대지수인 VIF의 값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3. 가설검증

가. 세무기장보수 결정요인의 영향 검증(의뢰인 관점)

의뢰인의 관점에서 세무기장보수 결정요인이 기장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장보수 결정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월기장보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식 모형은 다음과 같다.

$$Y = \alpha + \beta_1 Y_1 + \beta_2 Y_2 + \beta_3 Y_3 + \beta_4 Y_4 + \beta_5 Y_5 + \beta_6 Y_6 + \beta_7 Y_7 + \beta_8 Y_8 + \beta_9 Y_9 + \beta_{10} Y_{10} + \beta_{11} Y_{11} + \beta_{12} Y_{12} + \beta_{13} Y_{13} + \beta_{14} Y_{14} + e$$

Y =세무기장 보수 지급액의 로그값

Y_1 =매출액으로 2007년도 매출액의 로그값

Y_2 =업종으로 제조업이면 1, 비제조업이면 0,

Y_3 =기업형태로 법인기업이면 1, 개인 기업이면 0,

Y_4 =종업원 수로 상시종업원 수,

Y_5 =사업자유형으로 과세사업자 1, 면세사업자 0,

Y_6 =사업장소재지로 외지지역 1, 상가밀집지역 0,

Y_7 =세무상담 빈도수로 많을 경우(월 3회 이상)에는 1, 적을 경우에는 0,

Y_8 =소비성경비(접대비+기부금+광고선전비) 증가율로서(2006년도 소비성경비-2005년도 소비성경비)/2005년도 소비성경비

Y_9 =중점관리업종통보 여부로서 통보받은 적이 있는 경우 1, 통보받은 적이 없는 경우 0

Y_{10} =신고 소득률 저조업체 통보여부로서 통보받은 적이 있는 경우 1, 통보받은 적이 없는 경우 0

Y_{11} =세무조사 이후로 세무조사를 받은 지 경과 년수

Y_{12} =기장의뢰 세무대리인 형태로서 세무법인은 경우 1, 개인세무대리인은 0,

Y_{13} =세무대리인 개업경력으로서 세무대리인의 개업경력 해당 년수

Y_{14} =만족도로 5점 척도로 평가

기장보수 결정요인이 기장보수수준에 미치는 설명력($Adj R^2$)은 0.54로 나타났으며, 회귀식과 회귀계수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 값은 44.41로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세무기장보수 결정요인 중 기장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은 매출액, 기업형태, 종업원 수, 사업자 유형, 세무 상담 빈도수, 세무대리인 개업 경력, 세무서비스 만족도로 나타났다.

〈표 14〉 세무기장보수 결정요인 가설 분석 결과 (의뢰인)

변 수	B	표준오차	베 타	t	VIF
(상수)	2.238	0.197	0.000	11.339 ***	0.000
매출액	0.170	0.014	0.459	12.500 ***	1.523
업 종	0.039	0.031	0.042	1.283	1.234
기업 형태	0.216	0.033	0.234	6.628 ***	1.412
사업자 유형	0.107	0.057	0.059	1.863 *	1.120
종업원 수	0.008	0.002	0.172	4.865 ***	1.404
지역 특성	-0.009	0.031	-0.009	-0.277	1.196
세무상담 빈도수	0.050	0.029	0.055	1.726 *	1.135
중점관리업종 통보여부	0.079	0.059	0.047	1.328	1.386
소비성경비 증가율	-0.005	0.004	-0.043	-1.414	1.051
신고소득률 저조업체 통보여부	-0.059	0.049	-0.041	-1.189	1.367
장기미조사업체 여부	0.005	0.004	0.036	1.149	1.137
세무대리인 소속형태	0.021	0.042	0.016	0.490	1.142
세무대리인 경력	0.006	0.003	0.072	2.098 **	1.326
세무서비스 만족도	0.079	0.023	0.103	3.407 ***	1.040
adj R^2 = 0.54 F = 44.41 p = 0.000					

주1) 종속변수 : $\ln(\text{기장보수})$

2) 독립변수 : 매출액=2007년도 매출액의 로그 값, 업종=제조업 1, 비제조업 0, 기업형태=법인기업 1, 개인기업 0, 사업자유형=과세사업자 1, 면세사업자 0, 종업원 수=상시종업원수, 지역특성=외지 1, 상가 밀집지역 0, 세무상담 빈도수=많음(월3회이상) 1, 적음 0, 중점관리업종 통보여부=통보받음 1, 비통보 0, 소비성경비 증가율=(2006년도 소비성경비-2005년도 소비성경비)/2005년도 소비성경비, 신고소득률 저조업체 통보여부=통보 1, 비통보 0, 장기미조사업체=세무조사를 받은지 몇년, 세무대리인 소속형태=세무법인 1, 개인세무대리인 0, 세무대리인 경력=개업경력 해당 년수, 세무서비스 만족도=5점 척도

3) * $p < 0.1$, ** $p < 0.05$, *** $p < 0.01$

반면에 업종, 지역특성, 중점관리업종 여부, 소비성 증가율, 신고 소득률 저조업체 여부, 장기미조 사업체여부, 세무대리인의 소속형태 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을 기초로 가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액이 클수록 빈번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기타 경비 영수증의 많은 수량, 신고 업무의 과중, 대응하는 경비 산정 및 입력에 따른 기장업무 뿐만 아니라 기타 부대업무도 많이 발생 하게 된다. 이는 매출액이 높으면 세무기장 보수는 더 높게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매출액 변수의 t값이 12.500으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하므로 <가설 1-1>은 채택된다.

둘째, 제조업의 경우는 비제조업보다 거래가 복잡하고 원가계산을 추가로 해야 하는 등 기장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으므로 기장보수가 높게 책정될 것이다. 분석 결과, 베타 값이 0.042로서 베타 값이 (+)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는 기장보수가 높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종의 t값이 1.283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은 기각된다.

셋째, 기업의 형태는 개인기업과 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형태의 차이는 세무기장보수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기장보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기업의 형태차이는 기장보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기업형태의 t값이 6.628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하므로 <가설 1-3>은 채택된다.

넷째, 사업자유형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과세사업자일 경우 면세사업자보다 기장보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비해 세무서비스 대리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기장보수가 높게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자유형 차이는 기장보수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업형태의 t값이 1.863으로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하므로 <가설 1-4>은 채택된다.

다섯째, 종업원 수는 상시 종업원 수를 의미하며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세무기장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하는 종업원 수가 많으면 갑종근로소득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업무와 일반적인 부대업무 과중이 예상된다. 따라서 종업원 수가 많게 되면 기장업무가 복잡해지고 더 많은 기장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기장보수는 더 높게 책정될 것이다. 분석 결과, 종업원의 t값이 4.865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하므로 <가설 1-5>은 채택된다.

여섯째, 의뢰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장거리이거나 외지지역이면 근거리이거나 상가 밀집지역보다 기장보수가 높게 결정될 것이다. 분석 결과, 지역특성의 t-값이 -0.277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6>은 기각된다.

일곱째, 세무상담 빈도수는 의뢰인의 사업 특성상 업무가 복잡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담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담 빈도수가 높을수록 기장보수는 더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상담빈도 수의 t값이 1.726으로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하므로 <가설 1-7>은 채택된다.

여덟째, 소비성경비증가율이 기장 보수에 미치는 영향 가설 분석 결과, 소비성경비증가율의 t-값이 -1.414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8>은 기각된다.

아홉째, 중점관리업종 여부가 기장 보수에 미치는 영향 가설 분석 결과 중점관리업종여부의 t-값이 1.328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9>은 기각된다.

열번째, 신고소득을 저조업체 여부가 기장 보수에 미치는 영향 가설 분석 결과, 신고소득을 저조업체 여부의 t-값이 -1.189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0>은 기각된다.

열한번째, 장기 미조사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기장보수가 더 높게 결정될 가설 검증 결과, 장기미조사업체 여부의 t-값이 1.149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1>은 기각된다.

열두번째, 세무대리인의 소속형태가 기장 보수에 미치는 영향 가설 분석 결과, 세무대리인의 소속형태 변수의 t-값이 0.490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2>은 기각된다.

열세번째, 세무대리인의 경력이 기장 보수에 미치는 영향 가설 검증 결과, 세무대리인의 경력의 t-값이 2.098로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하므로 세무대리인의 경력이 많을수록 기장보수가 더 높게 결정될 것이라는 <가설 1-13>은 채택된다.

열네번째, 세무서비스만족도가 기장 보수에 미치는 영향 가설 검증 결과, 세무만족도의 t-값이 3.407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하므로 세무서비스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장보수가 더 높게 결정될 것이라는 <가설 1-14>은 채택된다. 따라서 세무서비스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장보수는 더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인 신종만(2004)의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기장보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매출액, 업종, 기업형태, 종업원 수, 중점관리업종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며 소비성경비증가율과 세무대리인의 경력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소속형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 기업형태, 종업원 수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며, 세무대리인의 경력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여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새로 변수로 추가한 세무 서비스 만족도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며, 사업자 유형, 세무 상담 빈도수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것으로 채택된 업종과 중점관리업종과 소비성 증가율은 채택되지 않아 상이한 결과가 나왔으며, 새로 변수로 추가한 지역특성과 신고소득을 저조업체여부, 장기미조사업체 여부 요인도 채택되지 않았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채택되지 않은 세무대리인의 소속형태 요인은 본 연구에서도 채택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와 차이가 나는 요인들은 추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나.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의 가설 검증 (의뢰인 관점)

의뢰인의 관점에서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이 세무조정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세무조정료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이 세무조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절대적인 수치를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속변수는 세무조정료로서 세무조정료의 로그값을 취하였으며, 독립변수는 2006년도 매출액, 원가계산 여부, 세무사 경력, 만족도 정도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e$$

Y = 세무조정료로서 세무조정료의 로그값

X_1 = 매출액으로 2006년도 매출액의 로그값

X_2 = 원가계산 여부로 원가계산 대상 업종=1, 원가계산 대상 업종 아님=0

X_3 = 세무대리인의 명성으로 세무대리인의 경력의 로그 값

X_4 = 만족도로서 세무조정료 요인 중 세무서비스 만족도의 중앙값 이상=1, 아닌 경우=0

의뢰인의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이 세무조정료에 미치는 설명력($Adj R^2$)을 살펴보면 0.225로 나타났으며, 회귀식과 회귀계수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44.272로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의뢰인의 세무조정료 결정요인 중 세무조정료에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은 매출액, 원가계산, 명성요인의 경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서비스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출액, 원가계산, 경력은 세무조정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세무조정료 결정요인 가설 분석 결과 (의뢰인)

	B	표준오차	베타	t	VIF
(상수)	3.629	0.278	0.000	13.041***	0.000
매출액(2006)	0.229	0.018	0.449	12.329***	1.020
원가계산	0.145	0.065	0.081	2.220**	1.023
세무대리인의 명성	0.099	0.059	0.060	1.674*	1.011
세무서비스 만족도	0.109	0.067	0.058	1.627	1.005
Adj R^2 = 0.225 F = 44.272 p = 0.000					

주1) 종속변수 : $\ln(\text{세무조정료})$

2) 독립변수 : 매출액 = 2006년도 매출액의 로그 값, 원가계산 = 원가계산 대상 업종 = 1, 원가계산 대상 업종 아님 = 0, 세무대리인 명성 = 세무대리인의 경력의 로그 값, 세무서비스 만족도 = 세무조정료 요인 항목 중 세무서비스만족도의 중앙값 이상 = 1, 아닌 경우 = 0

3) * $p < 0.1$, ** $p < 0.05$, *** $p < 0.01$

위의 분석을 기초로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액이 세무조정료에 미치는 영향 가설 검증 결과, 매출액 변수의 t -값이 12.329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하므로 매출액이 클수록 세무조정료가 높게 결정될 것이라는 <가설 2-1>은 채택된다. 즉, 매출액이 높을수록 세무조정료는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가계산 대상 업종 여부가 세무조정료에 미치는 영향 가설 검증 결과, 원가계산 업종 여부 변수의 t -값이 2.220으로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하므로 원가대상 업종이면 다른 업종보다 세무조정료가 높게 결정될 것이라는 <가설 2-2>은 채택된다. 즉, 원가대상 업종이 원가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보다 세무조정료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세무대리인의 명성요인이 세무조정료에 미치는 영향 가설 검증 결과, 세무대리인의 명성요인으로서 경력 변수의 t -값이 1.674로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하므로 세무대리인의 명성이 높을수록 세무조정료가 높게 결정될 것이라는 <가설 2-3>은 채택된다. 세무대리인의 명성요인으로서 경력이 많을수록 명성이 높아서 세무조정료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경력은 세무대리인의

개업년수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력이 많을수록 명성이 높아져 세무기장업무의 노하우와 업무처리 능력이 탁월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세무조정료가 높게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세무서비스만족도가 세무조정료에 미치는 영향 가설 검증 결과, 세무서비스 만족도의 t -값이 1.627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세무서비스만족도가 높을수록 세무조정료가 높게 결정될 것이라는 <가설 2-4>는 기각된다.

다. 불복청구 보수 결정요인 가설 검증 (세무대리인의 관점)

세무대리인의 불복청구 보수요인이 불복청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불복청구보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불복청구액, 불복청구 감세액, 세무대리인의 명성 및 협상력, 세무서비스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불복청구와 관련한 기술통계량 결과, <표 16>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불복청구와 관련한 표본 수는 세무대리인 전체 응답표본 239개 중에서 불복청구 경험이 있는 표본으로서 118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불복청구 경험이 있는 세무대리인의 경우 평균 세무보수액은 29,710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복청구액은 517,20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복청구 감세액은 평균 338,899천원이며, 세무대리인의 평균 경력은 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복청구 보수요인이 불복청구 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불복청구 보수 요인이 불복청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절대적인 수치를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속변수는 불복청구보수로서 불복청구보수의 로그값을 취하였으며, 독립변수는 불복청구액, 불복청구 감세액, 세무대리인의 경력, 세무서비스 만족도 정도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e$$

Y = 불복청구보수로서 불복청구보수의 로그값

X_1 = 불복청구액의 로그값

X_2 = 불복청구 감세액의 로그값

X_3 = 세무대리인의 명성으로 세무대리인의 경력의 로그값

X_4 = 세무서비스만족도로서 세무서비스 만족도의 5점 척도

불복청구 보수요인이 불복청구보수에 미치는 설명력($Adj R^2$)을 살펴보면 0.6627로 나타났으며, 회귀식과 회귀계수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58.4588로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불복청구 보수요인 중 불복청구보수에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불복청구액과 불복청구 감세액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반면에 세무대리인의 명성과 세무서비스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6〉 불복청구 보수요인 가설 분석 결과(세무대리인)

	B	표준오차	베타	t	VIF
(상수)	-0.5916	0.9116	0.0000	-0.6490	
불복청구액	0.3503	0.0913	0.2778	3.8356***	1.8192
불복청구 감세액	0.4766	0.0555	0.6130	8.5833***	1.7691
세무대리인의 명성 및 협상력	0.0523	0.2966	0.0096	0.1764	1.0262
세무서비스만족도	0.0612	0.1565	0.0219	0.3914	1.0862
Adj R^2 = 0.66.27		F = 58.4588		p = 0.000	

주1) 종속변수 : 세무보수액의 로그값

2) 독립변수 : 불복청구액=불복청구액의 로그값, 감세액=감세액의 로그값, 세무대리인의 명성 및 협상력=세무대리인의 경력연수의 로그값, 만족도=5점 척도

3) * $p < 0.1$, ** $p < 0.05$, *** $p < 0.01$

위의 분석을 기초로 가설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복청구액이 불복청구 보수에 미치는 영향 가설 검증 결과, 불복청구액 변수의 t -값이 3.8356으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하므로 불복청구액이 높을수록 불복청구 보수가 높게 결정될 것이라는 <가설 3-1>은 채택된다

불복청구액은 불복청구보수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복청구액이 높을수록 불복청구보수는 높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복청구 수입 시에 의뢰인의 불복청구액이 높으면 규모가 큰 사업일 것이고 과세 내용이 복잡하여 불복청구에 취지 및 내용과약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될 것이다. 따라서 불복청구액이 높을수록 불복청구보수는 높게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불복청구 감세액이 불복청구 보수에 미치는 영향가설 검증 결과, 불복청구 감세액 변수의 t -값이 8.5833으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하므로 불복청구 감세액이 높을수록 불복청구보수가 높게 결정될 것이라는 <가설 3-2>은 채택된다. 불복청구 감세액이 높을수록 불복청구 보수는 높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복청구 수입 시 일반적으로 불복청구 감세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불복청구 보수로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세무대리인의 명성 및 협상력이 불복청구 보수에 미치는 영향 가설 검증 결과 세무대리인의 명성 및 협상력의 t -값이 0.1764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세무대리인의 명성 및 협상력이 높을수록 불복청구보수가 높게 결정될 것이라는 <가설 3-3>은 기각된다.

넷째, 세무서비스만족도가 불복청구 보수에 미치는 영향 가설 검증 결과 세무서비스만족도의 t -값이 0.3914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세무서비스 만족도가 높을수록 불복청구보수가 높게 결정될 것이라는 <가설 3-4>은 기각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과 의뢰인의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요인이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여 합리적인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세무대리서비스 보수는 기장보수, 세무조정료, 불복청구 보수 등 3종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실증연구방법으로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자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지역 등 수도권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대리인과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연구대상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서비스 업무를 의뢰하는 의뢰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중 부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세무대리인 239부와 의뢰인 626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의 연구자료로 이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기장보수 결정요인이 기장보수에 미치는 영향과 의뢰인의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이 세무조정료 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세무대리인의 불복청구 보수 결정요인이 불복청구 보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뢰인의 기장보수 결정요인이 세무기장 보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출액, 기업형태, 종업원 수, 세무서비스 만족도, 세무대리인의 경력, 사업자 유형, 세무상담 빈도수가 기장보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출이 높을수록,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종업수가 많을수록, 세무서비스 만족도가 높을수록, 세무대리인의 경력이 많을수록,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보다, 상담빈도수가 많을수록 세무기장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종, 지역특성, 소비성 증가율, 중점관리업종, 신고 소득율, 저조업체, 장기미조사업체, 세무대리인의 소속형태는 기장보수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둘째, 의뢰인의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이 세무조정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출액, 원가계산업종, 세무대리인의 경력이 높으면 세무조정료가 높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서비스 만족도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셋째, 세무대리인의 불복청구보수 결정요인이 불복청구보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복청구액, 불복청구 감세액이 많으면 불복청구 보수가 높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경력과 세무서비스 만족도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세무대리인과 의뢰인의 전체의 대표를 반영한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연구대상자를 수도권에 개업하는 세무대리인과 그 대리인에게 세무서비스를 의뢰하

는 의뢰인을 선정하게 하여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일반화 하는 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세무보수 결정요인들이 본 연구자의 다소 주관적인 변수들을 추출하여 사용한 한계점이 있다.

셋째, 의뢰인 관점에서 불복청구보수 관련 설문과 세무자문료 등 관련 설문 응답자가 적어서 의뢰인 관점에서 불복청구 보수 및 세무자문료 등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향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연구 대상자 선정 시 임의로 선정하지 말고 세무대리인의 지역별 규모별, 연령별, 성별, 세무대리인 소속형태별로 표본을 정확히 선정하고, 세무대리인의 의뢰인 선정 시 보수결정요인에 해당하는 분류별로 더 많은 의뢰인을 선정하여 심도있게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수 이외에 다양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세무보수 결정요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뢰인 관점에서 불복청구와 세무자문료 관련 설문 답변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본 수를 늘려서 분석하거나 불복청구나 세무자문 경험에 있는 집단에 대하여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수영 · 김문철. 2001, “감사보수의 결정요인과 감사보수체계 변화로 인한 효과분석”. 회계학연구 제26권 제2호 : 115 - 144.
- 김연식. 2003.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홍규. 2004. “세무대리서비스 품질요인과 세무대리인 변경의사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종길 · 최기호. 2006. “회계감사인의 산업별 전문성과 회계감사보수와의 관계”. 회계학연구 제31권 제1호 : 33 - 68
- 노준화 · 배길수. 2008. “적정감사보수와 적정감사투입시간에 대한 감사인들의 인식 : 설문조사 결과” 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 1 - 26
- 배덕광. 2003. “세무조사 대상법인의 선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종만. 2005. “세무서비스 기장보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금주 · 한문성 · 홍정화. 2008.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요인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제21권 : 339 - 364.
- 최 관 · 주인기. 1998. “외부감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피감사회사의 특성별 분석과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7권 제1호 : 61 - 86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5, 2006, 2007.
-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Determination of Taxation Representation Service Fees

Lee, Geum Joo* · Hong, Jung Hwa**

— <Abstract> —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for making empirical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he determination of taxation representation service fees and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necessary for rational determination of taxation representation service fees. For the analysis, taxation representation service fees were divided into three types – bookkeeping fee, tax adjustment fee and appeal fee.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ir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examining the effect of clients' determinants of bookkeeping fee on the determination of bookkeeping fee, bookkeeping fee was higher when sales was high, when the company was a corporation than an individual, when the number of employees was large, when satisfaction with tax services was high, when the tax practitioner had long experience, when the client was a regular taxpayer than an exempted taxpayer, and when the frequency of consultations was high. However, the determination of bookkeeping fee was not affected significantly by business category, area characteristic, the rate of consumptive increase, business under intensive management, company with low tax return ratio, long – term unaudited company, and tax practitioner's organization type.

Second, i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examining the effect of clients' determinants of tax adjustment fee on the determination of tax adjustment fee, tax adjustment fee was higher when sales was high, when the client was a cost accounting business, and when the tax practitioner had long experience. However,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tax services was not significant.

Third, i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examining the effect of tax practitioners' determinants of appeal fee on the determination of appeal fee, appeal fee was higher when the amount of appeal was large and the amount of tax reduction by the appeal was large. However, the effect of tax practitioner's career and satisfaction with tax services was not significant.

<Key words> taxation representation service fees, bookkeeping fee, tax adjustment fee, appeal fee

* President, Lee Geum Joo's Tax Office

** Professor, Kyungwon University